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-322호

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'혁신형 창업과제(R&D+사업화)' 제2차 시행계획 공고

「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」중 '혁신형 창업과제(R&D+사업화)'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- □ **사업목적** : R&D 및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
- □ 지원규모 : 총 90.25억원(2차 : 19억원, 20개 과제 내외)

<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>

7 8	차 수 별		1차	2차	
구 분	신청·접수		6월	8월	
	예산 90.25억원		71.25억원	19억원	
혁신형창업과제 혁신형창업과제	과제수	70개 과제	50개 과제	20개 과제	
(혁신성장패키지)	지원대상		창업진흥원의 추 (사업화지원(혁신성장		

- [참고] 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
 - ② 2차 R&D 예산은 【회계년도 일치】에 따라 '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(차액은 '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)

2. 지원유형 및 분야

□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

□ 지원분야 :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「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」20대 전략분야,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

◇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

- ① 인공지능, ② 빅데이터, ③ 클라우드, ④ 사물인터넷, ⑤ 5G, ⑥ 3D프린팅,
- ⑦ 블록체인, ⑧ 지능형반도체, ⑨ 첨단소재, ⑩ 스마트헬스케어, ⑪ AR·VR,
- ① 드론, ③ 스마트공장, ⑭ 스마트팜, ⑤ 지능형로봇, ⑥ 자율주행차, ⑰ O2O,
- ⑱ 신재생에너지, ⑲ 스마트시티, ⑳ 핀테크
- *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: [별첨1] 참조
- □ 지원방식 :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(R&D)하고, 사업화(창업도약패키지사업)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3.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**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***으로써,
- 창업진흥원의 [®] 「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 (구글플레이 연계) 창업기업 모집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-169호)」, [®] 「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-170호)」를 통해 **창업진흥원의 주관 기관별 추천을 받은 기업**
 - *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창업진흥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. [붙임 1]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
 -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조(적용범위), 동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

4.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

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

- **정부출연금** : 총 사업비의 80%이내에서 최대 2년, 4억원 이내 지원^{*}
 * 연간 2억원 이내
- **민간부담금** :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을 부담*
 - *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□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

-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30%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
 - * 인건비 인정비목 : 신규채용인건비, 외부인건비,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, 연구수당,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(미지급인건비 제외)
-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(2년x2억원)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,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
-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
-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(채용예정인)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내국인,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)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(예정) 확인서 제출 필수
-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로 신청하고,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

□ 기술료 징수 기준
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주관기관)
- (납부방식)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- ☞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 - 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 >> 정보마당 >> 공지사항 "기술료 메뉴얼" 참고

5.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- 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- 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-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*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
 - 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온라인 입력 제출 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 (창업)	 ○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○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*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*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,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 부터 업력 산정 * 단,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법인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,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[붙임 1] 참조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	○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○ 국가 R&D사업 관리서비스(rndgate.ntis.go.kr) 조회 등 ○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

□ 지원제외 사항

- 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. R&D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할 수 있음
-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③ 기(既) 개발 또는 기(既) 지원 여부
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
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-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*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구 분	확인방법
의무사항	○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
불이행	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

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구	분	확인방법				
참여제한		○ 참여제한확인 :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				
		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				

-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* 이때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 - ⑦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
-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- ©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- 라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< 관련 문의처 >

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: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: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055-751-9636)
 - 마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- 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 · 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

<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>

-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→ 주채권 은행에 문의
-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
 - →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(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·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)
 - → 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부채비율,	○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자본잠식 등	→ 접수마감일 기준 '18년도 확정(관할 세무서 신고)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(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6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·접수기간 : 2019년 8월 12일(월) ~ 8월 30일(금), 18:00까지
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(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)
- ※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되나,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
- ※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

- □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 - ※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 - ※ 신청서류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 사업공고 → **"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(R&D+사업화) 제2차 시행계획 공고"**
 - ※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 (접수마감일 기준으로,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)

ㅇ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	
-	사업계획서 Part I	사업계획서 Part II	<접수증 출력>	

① 1단계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

② 2단계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

- 사업계획서 Part I 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③ 3단계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
-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

④ 4단계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) 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)
 - ☞ 접수 완료 후 **다시 수정할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**

-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(www.smtech.go.kr 공고 확인)
- ※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(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)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
 - * Part I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

단계	연 번	 서식 명			서류	
	<u> </u>	즈시기어 기스게바다이 나어게하다	Part I		해당시	
	1	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* 개발기간 시작일은 '19. 10. 1.로 기재. 단,	Ο			
		개월기간 시작일은 19.10.1.도 기재. 단,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향후 개발기간은 일괄 조정될 수 있음	Part Ⅱ	Ο		
	2	신용상태 조회동의서	Ο			
	3	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	Ο			
	4	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입·이용 동	0			
	5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*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	등록증과	0		
		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				
	6	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		0		
	7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*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(관할 세무서 신고) 전년 제출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제출	0			
사업	8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	0			
신청시	9	혁신형 창업과제(R&D+사업화) 지원유형 증빙				
		* 공고문 신청유형 참고(5~6page 참조)	Ο			
		* 유형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				
		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				
	10	_ - ' ' - ' ' - ' ' ' '				
	(1)	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		0		
	••	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				
	(12)	연구시설·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			0	
	••	*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2	작성			
		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				
	13	*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			0	
	14)	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		Ο		
	(15)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시	†		0	

7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추진 시기

평가 및 선정절차

9월~ 10월 대면평가

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,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u>+</u>

현장조사

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*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

10월~ 11월

과제선정

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, 정책방향,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

- ※ 현장조사 제외 대상: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&D 既 지원 기업,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·기보의 정책자금·보증지원 기업, ③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
- ※ 추진주체: 대면평가(전문기관), 현장조사(관리기관), 과제선정(전문기관)

8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- ② 창업기업과제(ⓐ)는 내역사업(ⓑ+ⓒ+ⓓ)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
 -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는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만 재신청 가능
 - 혁신형 창업과제(ⓒ)는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
<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>

사업명	내역사업명	세부과제명					
		ⓑ 디딤돌 창업과제(여성참여·소셜벤처과제 포함)					
			기술	기반 창업형			
	창업기업과제 @		패키지형	R&D+사업화 (혁신성장 패키지)			
창업성장		│ ⓒ 혁신형 창업과제 │		R&D+IP전략			
기술개발				R&D+사내벤처			
			민간투자 연계형				
		④ 선도형 창업과제					
	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	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과제					

③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<u>해당년도</u>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(총량제)

기존 수행중인 과제수	신규 신청가능 여부	신규 수행가능 과제수
2개	불가	불가
1개	가능	1개
0개	가능	27

* 단,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&D역량제고, 연구기반활용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), 첫걸음협력R&D, 제품 서비스R&D, 기술전문기업협력R&D, 공정·품질R&D, 구매조건부신제품R&D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&D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(2개 제한)에서 예외

- ④ R&D 졸업제 : 최대 4회까지만 '졸업제 대상사업' 지원 가능
 -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 ('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)으로 '졸업제' 대상사업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'졸업제' 사업 신청 불가능
 - * '중소기업R&D역량제고', '연구기반활용'은 계속 참여 가능하나 졸업제 해당 중소기업이 '중소기업R&D역량제고'의 R&D기획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&D로 연계지원은 불가
 - '舊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'에 참여한 기업은 '13년부터, '공정· 품질 기술개발사업(舊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)'에 참여한 기업은 '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< 졸업제 사업 >

공정.품질	舊산학연협력	창업성장	제품서비스	기술전문기업협력
		총 4회		

-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,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
- ②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,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중이 3% 이상 * 단,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(1년 또는 2년)으로 평균 산정
- ④ 전년도 직·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, 매출액 대비 직·간접 수출액 비중이 20% 이상
-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 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 - 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
-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 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
-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」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
 -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· 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·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
 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「과학기술 기본법」제28조,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및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름
 - * 1억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 (과기부)에서 실시하나,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연구시설·장비라 함은 연구·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 -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·장비는 연구시설·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 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
-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*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 ①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·등록 가능
 -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

- ⑨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
- ①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
 -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(단,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업)

<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>

- ⑦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(경쟁업체명을 "OO"으로 작성한 경우, "OO전자" 또는 "OO주식회사"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,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)
- 바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,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
- @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
- @ 사업자등록번호 확인: www.nicebizinfo.com, dart.fss.or.kr(전자공시시스템)
- ① 사업계획서 Part I의 "기술개발개요"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
- 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」, 「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,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,「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」에 따름

9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	담당7	관(부서)	문의사항	전 화
	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공고	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
R&D	관리기관	지방중소벤처기업청	진도점검·최종점검	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
	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창업기술평가실)	신청·접수, 과제평가, 사업계획 작성, 유의사항	042-388-0114 (내선2)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.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- .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: http://www.mss.go.kr
- 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IIfqd

붙임

- 1.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
- 2. 위탁연구기관의 범위

별첨

- 1.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
- 2. '17~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(K-ESP)리스트

붙임 1

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

주 체	사업장소		사		례			창업(겨부		
		갑장소에서의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조직병	변경		
A 711 OLO 1 7 L T	가자시네니	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A개인이	갑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형태병	변경		
		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		갑장소에서의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위장경	창업		
л Ш ОГОГ	갑 장소에서	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사급한에	11 8포에지	갑장소에서의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형태병	변경		
		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		│ 갑상소에서의 │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법인7	전환		
ا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		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A개인이	을 장소에서	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		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		갑장소에서의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사업성	승계		
4 HI OLOL		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A립인이	을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	B법인	설립하여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		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	설립하여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		
		갑장소에서의	다시	A명의로 ·	동종업종	제품을 ′	생산	사업(기전		
A가	C TI . 0" : 1	O TI 1 0" : 1	O TI 1 0" : 1	기존사업을 폐업하고	다시	A명의로	이종업종	제품을	생산	창	업
(개인)	을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	다시	A명의로 ·	동종업종	제품을	생산	사업력	확장		
		기존사업을 폐업않고	다시	A명의로	이종업종	제품을 ′	생산	업종	추가		

- 주) 1.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 (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"동종업종"에 해당)
 - 2. "갑" 장소는 기존사업장, "을" 장소는 신규사업장(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(담, 출입문, 도로 등)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)
 - 3. "A명의"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
 - 4.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 - (예시)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

붙임 2

위탁연구기관의 범위

- 1. 국립,공립연구기관
-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 부출연연구기관

(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건 설기술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 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화 학연구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재료연구소,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)

- 3.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(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 의학원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정 보통신산업진흥원, 기초과학연구원 등)
- 4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(한국섬유개발연구원, 한국신발피혁연구원, 한국실크연구원, 다이텍연구원, 한국광기술원, 한 국패션산업연구원, 한국니트산업연구원, 자동차부품연구원, 한국정보기술연구원, 전자부품 연구원, 중소조선연구원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한국섬유기계연구원, 한국로봇융합연 구원 등)
-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
- 6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- 7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다른 기능대학
- 8. 「민법」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(한국의류시험연구원, FITI시험연구원, 한국섬유소재연구소, 포항산업과학연구원, KOTITI시 험연구원, 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)
- 9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- 10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- * 위 범위 외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(www.kolas.go.kr)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(www.g4b.go.kr)의 교정·시험·검사 기관인 경우(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 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)
- 11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기업)
- 12.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중소벤 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(K-ESP)